

01 제도소개

가. 추진배경

- 환경오염 물질의 다양화에 따라 측정·분석 결과가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
- 각종 측정·분석 결과가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정확한 분석 및 검증 요구
-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측정·분석과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전문화된 측정·분석 기술인력 양성방안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 신설(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'06.10.4 제정, '08.10.5 시행)

나. **주요역할** : 환경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분석과 결과 검증(데이터 관리), 생산된 시험·검사성적서 및 관련기록부에 서명(품질책임)

02 법적근거

환경분야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,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

03 검정 시험 안내

가. **검정분야** : 대기환경측정분석, 수질환경측정분석

나. **응시자격** :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- 1)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2)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3)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4) 환경 분야(대기, 수질, 토양, 폐기물, 먹는물, 실내공기질, 악취 또는 유해 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)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- 5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)를 졸업한 사람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)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
- 6)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(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)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(「고등교육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)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
 - 가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)

나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)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

- 7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)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

다. **결격사유** :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- 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,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또는 「악취방지법」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4)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5)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※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라. **검정방법** : 필기시험, 실기시험

마. **시험시행 일정**

1) **필기시험** : 대기·수질분야 동시 시행

구분	원서접수	시험시행일	합격자발표
1차	'17. 4. 21(금) 10:00 ~ 5. 1(월) 17:00	'17. 5. 20(토)	'17. 6. 12(월) 10:00
2차	'17. 10. 20(금) 10:00 ~ 10. 30(월) 17:00	'17. 11. 18(토)	'17. 12. 12(화) 10:00

2) **실기시험** : 대기·수질분야 각각 시행

구분	원서접수	시험시행일		최종합격자 발표일
		작업형	구술형	
대기	'17. 6. 14(수) 10:00 ~ 6. 28(수) 17:00	'17. 7.22(토) ~ '17. 10.29(일)		'17. 11. 13(월) 10:00
수질				

※ 실기시험(작업형, 구술형)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규모에 따라 실기시험 세부 시행 횟수 및 시행일을 필기시험자 합격발표일에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

바. **시험장소**

- 1) **필기시험** : 국립환경인력개발원(변경시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 공고)
- 2) **실기시험(작업형 및 구술형)** : 국립환경인력개발원

04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

가. 필기시험

1) 시험과목 및 방법

검정 분야	시험과목	시험방법			시험시간	비고
		소개	객관식	주관식		
대기 (4과목)	정도관리	100점 (40문항)	90점 (36문항)	10점 (4문항)	1교시(50분) 10:00~10:50	○객관식 (4지선다형) ○주관식 (서술·단답·계산형)
	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	100점 (20문항)	90점 (18문항)	10점 (2문항)	2교시(100분) 11:20~13:00	
	실내공기질공정 시험기준	100점 (20문항)	90점 (18문항)	10점 (2문항)		
	악취공정시험법	100점 (20문항)	90점 (18문항)	10점 (2문항)		
수질 (3과목)	정도관리	100점 (40문항)	90점 (36문항)	10점 (4문항)	1교시(50분) 10:00~10:50	
	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	100점 (20문항)	90점 (18문항)	10점 (2문항)	2교시(70분) 11:20~12:30	
	먹는물수질공정 시험기준	100점 (20문항)	90점 (18문항)	10점 (2문항)		

2) 시험범위

검정 분야	시험과목	
	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	정도관리
대기	-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(환경부고시 제2016-211호, '16.11.22.), -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(환경부고시 제2017-11호, '17.1.17.), - 악취공정시험법 (환경부고시 제2014-130호, '14.8.11.) - 공정시험기준 관련 이론(일반화학, 분석 화학 등)	○ QA/QC와 관련된 모든 사항 - 정도관리 일반 : 기본이론, 실험기구, 시약 및 표준물질 - 시료채취 및 관리 : 시료채취일반, 대기시료채취(대기분야), 수질시료채취(수질분야) - 실험실 운영관리 및 안전 : 실험실 운영관리, 실험실 안전 - 결과보고 : 시험결과 보고, 결과의 통계적 처리 - 정도관리 관련 규정 : 환경분야 시험·검사 관련 법령 및 정도관리 운영 규정, KOLAS 관련 규정 ※ 참고문헌 : 「환경시험·검사 QA/QC 핸드북」, 일반화학, 분석화학 등
수질	-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(환경부고시 제2017-4호, '17.1.11.), -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(환경부고시 제2015-214호, '15.11.5.) - 공정시험기준 관련 이론(일반화학, 분석 화학 등)	